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이병진 · 윤준병 · 송옥주
박용갑 · 김태선 · 이정문
이원택 · 허성무 · 이상식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,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,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(안 제5조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

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1.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. ~ 하. (생 략)	1. ----- ----- 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거. 「 <u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</u> 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</u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국립호국원 가. ~ 라. (생 략)	4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마. 「 <u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</u> 」 제3조제2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<u>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로서</u>

5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	<u>사망한 사람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